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2019.12.6.)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목 차

◆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0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5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IV	2020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5
V	검토결과(검토의견)	17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161 19-162
----------	------------------

2019. 12. 6.
전문위원 신준호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환경국)
- 나. 제 출 일 : 2019. 11. 15.
- 다. 회 부 일 : 2019. 11. 18.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0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된 마포구 전체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41% 증가된 총 6,85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38.93%로 전년대비 1.21%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²⁾는 56.59%로 전년대비 3.00% 낮아졌음.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 일반회계는 6,049억원으로 전년대비 9.55% 증가함.
- 특별회계는 808억원으로 전년대비 0.59% 증가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683억원으로 전년대비 403억원이 증가함.

가. 2020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0 예산액	2019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85,830,634	632,614,518	53,216,116	8.41%
일반회계	604,989,875	552,251,228	52,738,647	9.55%
특별회계	80,840,759	80,363,290	477,469	0.59%
의료급여기금	480,690	461,144	19,546	4.24%
마포농수산물시장	7,566,726	7,330,522	236,204	3.22%
주차장	64,753,027	68,695,526	△3,942,499	△5.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96,191	2,916,943	4,079,248	139.85%
관광사업	544,125	959,155	△415,030	△43.27%
건축안전	500,000	0	500,000	순증

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 ①=②+③-④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⑤	증 감 ⑥=①-⑤
		수입②	지출③		
합 계	68,392,997	51,043,987	10,706,338	28,055,348	40,337,649
1 재난관리기금	7,049,603	1,170,591	515,420	6,394,432	655,171
2 남북교류협력기금	428,340	207,680	150,000	370,660	57,680
3 중소기업육성기금	2,670,539	2,118,687	3,000,420	3,552,272	△881,733
4 자활기금	1,719,398	87,642	80,800	1,719,398	6,842
5 노인복지기금	1,307,294	127,576	27,420	1,207,138	100,156
6 양성평등기금	2,138,041	40,000	40,000	2,138,041	0
7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34,340	28,495	40,420	846,265	△11,925
8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006,913	78,930	251,220	1,179,203	△172,290
9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6,115,242	3,014,315	2,304,098	5,405,025	710,217
10 옥외광고발전기금	874,237	421,000	750,800	1,204,037	△329,800
11 도로굴착복구기금	1,395,310	1,126,050	1,103,540	1,372,800	22,510
12 식품진흥기금	2,055,713	384,873	559,870	2,230,710	△174,997
1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118,477	1,556,148	1,879,880	442,209	△323,732
14 공유재산 관리기금	40,679,550	40,682,000	2,450	0	40,679,550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4,989,875	552,251,228	52,738,647	9.55%
지방세수입	138,461,129	115,572,286	22,888,843	19.80%
세외수입	52,770,252	53,466,977	△696,725	△1.30%
지방교부세	11,817,000	8,127,000	3,690,000	45.40%
조정교부금등	91,921,997	89,441,720	2,480,277	2.77%
보조금	266,563,497	239,713,245	26,850,252	11.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456,000	45,930,000	△2,474,000	△5.39%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80,840,759	100%	80,363,290	100%	477,469	0.59%
세외수입	23,543,544	32.10%	23,043,828	29.75%	499,716	2.17%
경상적세외수입	16,741,073	22.83%	16,415,708	21.20%	325,365	1.98%
임시적세외수입	6,802,471	9.27%	6,628,120	8.56%	174,351	2.63%
보조금	1,340,790	1.66%	634,544	0.79%	706,246	111.30%
국고보조금등	1,100,445	1.36%	403,972	0.50%	696,473	172.41%
시·도비보조금등	240,345	0.33%	230,572	0.30%	9,773	4.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956,425	69.22%	56,684,918	70.54%	△728,493	△1.29%

- 2020년도 세입여건은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또한 예상되나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증가되어 2019년도에 비해 재정이 확대됨.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4,989,875	100%	552,251,228	100%	52,738,647	9.55%
인건비	105,740,203	17.48%	101,830,851	18.44%	3,909,352	3.84%
물건비	42,170,022	6.97%	43,169,761	7.82%	△999,739	△2.32%
경상이전	411,458,345	68.01%	374,148,921	67.75%	37,309,424	9.97%
자본지출	37,632,872	6.22%	27,109,759	4.91%	10,523,113	38.82%
내부거래	3,227,164	0.53%	1,127,549	0.20%	2,099,615	186.21%
예비비및기타	4,761,269	0.79%	4,864,387	0.88%	△103,118	△2.21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840,759	100%	80,363,290	100%	477,469	0.59%
인건비	3,106,704	3.84%	2,965,867	3.69%	140,837	△1.58%
물건비	3,064,947	3.79%	2,294,234	2.85%	770,713	9.19%
경상이전	14,822,207	18.34%	13,735,681	17.09%	1,086,526	8.24%
자본지출	2,534,459	3.14%	8,737,924	10.87%	△6,203,465	△44.68%
융자및출자	1,000	0.00%	1,500	0.00%	△500	△33.33%
예비비및기타	57,311,442	70.89%	52,628,084	65.49%	4,683,358	8.90%

- 세출여건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복지정책 확대로 지출이 증가된 가운데, 자본지출에서 전출금(기타회계등전출금: 건축안전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된 내부거래로 186.21%로 대폭 증가함.

Ⅲ.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676,009	10,374,864	301,145	2.90
일반회계	10,676,009	10,374,864	301,145	2.90
특별회계	해당없음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7,718,802	17,353,088	365,714	2.11
일반회계	17,718,802	17,353,088	365,714	2.11
특별회계	해당없음			

-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06억7,60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7,486만4천원 대비 3억114만5천원, 2.90%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1.76%에 해당하며,
- 세출예산은 177억1,880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5,308만8천원 대비 3억6,571만4천원, 2.11%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2.92%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676,009	10,374,864	301,145	2.90
세외수입	475,541	823,104	△347,563	△42.23
경상적세외수입	394,101	388,630	5,471	1.41
사용료수입	92,465	88,112	4,353	4.94
사업수입	301,636	300,518	1,118	0.37
임시적세외수입	81,440	434,474	△353,034	△81.26
과징금및과태료등	81,440	434,474	△353,034	△81.26
보조금	10,200,468	9,551,760	648,708	6.79
국고보조금등	4,042,363	3,810,563	231,800	6.08
국고보조금등	4,042,363	3,810,563	231,800	6.08
시·도비보조금등	6,158,105	5,741,197	416,908	7.26
시·도비보조금등	6,158,105	5,741,197	416,908	7.26

- 재원별 현황은 경상적 세입인 사용료 및 사업수입 4억7,554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4,756만 3천원 감소하였음. 이는 식품위생과징금의 기금 운용 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임.

보조금은 102억4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4870만8천원으로 6.79%로 증가하였음.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총계	10,676,009	10,374,864	301,145
보건행정과	1,677,953	1,895,074	△217,121
위생과	105,864	391,364	△285,500
건강증진과	8,529,018	7,813,367	715,651
의약과	363,174	275,059	88,115

- 보건행정과는 시·도비보조금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암조기검진비 지원비용 등의 감소로 2억1,712만1천원 줄어든 16억7,795만3천원이며,
- 위생과는 전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의 식품위생과징금이 기금 수입임에도 일반회계로 잘못 편성한 부분을 재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8,550만원이 감소된 1억586만4천원임.
-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등 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난임부부 지원비용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용 1억9,851만7천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간호사 보수 2억687만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7억1,565만1천원이 증가한 85억2,901만8천원이 편성됨.
- 의약과는 재활보건사업, 서강보건지소 등의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8,811만5천원 증가한 3억6,317만4천원임.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17,718,802	100.00%	17,353,088	100%	365,714	2.11
인건비	3,456,284	19.51%	3,194,866	18.41%	261,418	8.18
물건비	1,303,733	7.36%	1,687,471	9.72%	△383,738	△22.74
일반운영비	1,137,213	6.42%	1,128,081	6.50%	9,132	0.81
여비	39,600	0.22%	437,280	2.52%	△397,680	△90.94
업무추진비	73,520	0.41%	48,710	0.28%	24,810	50.93
재료비	53,400	0.30%	53,400	0.31%	0	0.00
경상이전	12,839,385	72.46%	12,448,491	71.74%	390,894	3.14
일반보전금	783,340	4.42%	461,180	2.66%	322,160	69.86
포상금	800	0.00%	0	0.00%	800	순증
배상금등	1,000	0.01%	1,000	0.01%	0	0.00
민간이전	10,779,372	60.84%	10,422,129	60.06%	357,243	3.43
자치단체등이전	833,343	4.70%	1,181,963	6.81%	△348,620	△29.50
전출금	441,530	2.49%	382,219	2.20%	59,311	15.52
자본지출	119,400	0.67%	22,260	0.13%	97,140	436.39
시설비및부대비	27,000	0.15%	1,600	0.01%	25,400	1587.50
자산취득비	92,400	0.52%	20,660	0.12 %	71,740	347.24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억 1,880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571만 4천원, 2.11%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8.18%, 경상이전 일반보전금 69.86%,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87.50%가 증가함.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7,718,802	100.00%	17,353,088	100.00%	365,714	2.11
보건행정과	2,518,332	14.21%	2,934,946	16.91%	△416,614	△14.19
위생과	224,650	1.27%	209,795	1.21%	14,855	7.08
건강증진과	12,926,343	72.95%	12,370,579	71.29%	555,764	4.49
의약과	2,049,477	11.57%	1,837,768	10.59%	211,709	11.52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보건행정과	2,518,332	2,934,946	△416,614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2,419,800	2,747,320	△327,520
보건소 기능 강화	1,901,798	2,308,071	△406,273
통합민원서비스	86,675	78,215	8,460
암환자 의료비 지원	237,308	425,710	△188,402
건강도시 조성	8,180	8,180	0
암조기검진사업	276,132	526,860	△250,728
보건소운영개선(열린보건소)	28,000	1,520	26,480
정신보건사업	785,583	694,114	91,46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00,000	500,000	△100,000
지역사회건강조사	69,920	62,972	6,948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10,500	△500
감염병 관리	518,002	439,249	78,753
감염병예방관리	9,400	7,400	2,000
방역소독	143,867	146,086	△2,219
에이즈예방관리	169,219	154,871	14,348
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	1,500	1,500	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1,060	4,260	△3,200
국가결핵관리사업	185,566	117,742	67,824
결핵검진사업	7,390	7,390	0
행정운영경비	98,532	187,626	△89,094
기본경비	98,532	187,626	△89,094

- 보건행정과는 25억 1833만 2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억 1661만 4천원이 감액됨
- 주요 감소 내역은 ‘암조기검진비 공단 예탁 비용 등의 검진사업비 2억 5,072만8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사업비 ‘ 1억원 등 국, 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감소로 감액됨.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위 생 과	224,650	209,795	14,855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28,770	36,075	△7,305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28,770	36,075	△7,305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17,170	17,670	△500
위생업소 지도점검	5,310	12,115	△6,80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290	6,290	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138,778	34,411	104,367
식품위생 관리	138,778	34,411	104,367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32,710	34,411	△1,701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 운영	106,068	0	106,068
행정운영경비	57,102	139,309	△82,207
기본경비	57,102	139,309	△82,207
기본경비	57,102	139,309	△82,207

- 위생과는 2억 2,46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85만 5천원, 7.08% 증가됨.
- 주요 증가 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466만8천 이며, 감소 내역은 직원 여비 8,220만7천원임.

3) 건강증진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건강증진과	12,926,343	12,370,579	555,764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10,915,206	10,259,059	656,147
생활건강관리	1,353,519	1,404,924	△51,405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50,000	271,020	△21,020
건강증진사업	69,745	64,103	5,642
영양플러스사업	238,433	259,772	△21,33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만성병 관리교육)	2,940	2,940	0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32,000	232,000	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47,998	262,805	△14,807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45,000	44,160	840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64,061	66,112	△2,051
지역사회 만성질환 주치의 사업	104,611	92,018	12,593
열린보건소 운영	32,731	31,994	737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	44,000	56,000	△12,000
싱겁게 먹는 배움터	22,000	22,000	0
방문보건사업	116,321	95,635	20,686
재가암환자관리	12,000	12,000	0
마을건강센터 운영	38,368	57,948	△19,58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80,000	1,240,000	40,000
국가치매치료관리비	101,840	101,880	△40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23,400	19,200	4,200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1,570	21,570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700	1,580	1,120
모자보건관리	8,081,809	7,399,957	681,852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6,544	25,820	724
국가예방접종 실시	4,914,459	4,878,089	36,370
자체예방접종사업	132,910	117,590	15,320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43,798	42,421	1,377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18,000	26,600	△8,6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9,100	2,488	6,612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등 홍보비	2,000	2,00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8,000	106,700	△8,7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1,380	48,666	△17,286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3,800	13,400	△9,600
난임부부 지원	240,000	15,880	224,12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3,277	3,277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0	2,400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52,000	41,000	11,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41,490	475,412	366,07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72,790	515,120	△42,33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5,200	4,000	1,200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19,520	19,532	△12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732,145	678,793	53,352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71,996	380,769	△8,773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61,000	0	61,000
행정운영경비	2,011,137	2,111,520	△100,383
인력운영비	260,676	275,824	△15,148
인력운영비(방문간호사)	618,740	789,569	△170,829
인력운영비(서울아기건강첫걸음)	193,621	195,138	△1,517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845,768	682,294	163,474

- 건강증진과는 129억2,634만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억5576만4천원, 4.49% 증가됨.
- 주요 증가 내역은 방문보건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의료비로 3,637만원, ' 난임부부지원 '사업비로 2억2,412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6,607만8천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335만2천원, ' 남녀 건강출산 지원 '사업비로 6,100만원임.

- 주요 감소 내역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102만원, ‘영양플러스사업’ 2,133만9천원, ‘마을건강센터 운영’ 1,95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1,728만6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233만원임.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약과	2,049,477	1,837,768	211,709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1,704,894	1,442,013	262,881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1,143,423	1,050,405	93,018
아현문화건강센터	446,530	387,219	59,311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139,535	171,315	△31,78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300	74,764	12,536
의료기관 관리	7,247	7,247	0
의약품 조제·투약	4,980	5,980	△1,000
치아건강관리	129,477	126,760	2,717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	138,059	150,128	△12,069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97,800	107,554	△9,754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5,520	13,440	2,080
서강보건지소운영	76,975	5,998	70,977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54,247	301,039	153,208
건강검진	19,357	18,707	650
검사 및 검진사업	313,198	228,862	84,33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44,400	44,400	0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190	6,190	0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2,880	2,880	0
재활보건사업	30,124	0	30,12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8,098	0	38,098
응급의료관리	107,224	90,569	16,655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98,879	90,569	8,31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8,345	0	8,345
행정운영경비	344,583	395,755	△51,172
인력운영비	269,590	184,170	85,420
인력운영비(심폐소생술 교육)	41,518	33,684	7,834
인력운영비(아현건강증진센터)	156,737	150,486	6,251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71,335	0	71,335
기본경비	74,993	211,585	△136,592
일반운영비	70,013	87,385	△17,372
업무추진비	4,980	0	4,980

- 의약과는 구 일반회계 예산의 0.33%인 20억 4,947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1,170만9천원이 증가됨.
- 주요 증가 내역은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5,931만1천원, ‘서강보건지소 운영비’ 7,097만7천원, ‘검사 및 검진사업’ 으로 진단검사의학실 혈액학자동분석기 구입비 84,336천원, ‘서강지소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30,124천원, ‘서강지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38,098천원, ‘응급의료관리’ 에서 생명안전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등으로 16,655천원 증가됨.
- 주요 감소 내역은 ‘아현건강증진센터(아현지소)’ 운영비 3,178만원,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 (아현지소) 1,206만9천원이 감소됨.

IV. 2020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㉑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㉓ = ㉒ + ㉑	비 고
	수입 ㉒	지출 ㉔	증감 ㉒ = ㉔ - ㉓		
2,230,710	384,873	559,870	△174,997	2,055,713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2,615,583	2,339,601	275,982
세외수입	155,243	169,298	△14,055
경상적세외수입	155,243	169,298	△14,055
징수교부금수입	118,740	118,593	147
이자수입	36,503	50,705	△14,202
보건수입등및내부거래	2,460,340	2,170,303	290,037
보건수입등	2,460,340	2,170,303	290,037
융자금원금수입	229,630	100,264	129,366
예치금회수	2,230,710	2,070,039	160,671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2,615,583	2,339,601	275,982
보건의료	2,055,713	1,899,196	156,517
재무활동(위생과)	2,055,713	1,899,196	156,517
보건지출(식품진흥기금)	2,055,713	1,899,196	156,517
여유자금예치	2,055,713	1,899,196	156,517
식품의약안전	559,870	440,405	119,465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559,870	440,405	119,465
식품진흥활동(식품진흥기금)	559,870	440,405	119,465
식품진흥기금 운용	559,870	440,405	119,46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용자금원금, 수입예치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공공예금 및 통화금융기관용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다소 감소됨.
- 지출계획으로는 ‘보건의료’ 사업에 20억5,571만3천원, 식품의약품안전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5억 5,987만원임.

주요 증가 지출사업은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용자 5,000만원과 시설개선자금 용자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점검 및 영업자 가이드북 제작 홍보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특히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점검활동 사례비가 880만원 증액됨.

V. 검토결과

1. 검토의견

- 2020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변동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로 재산세는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의무적 지출 증가와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증가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6억7,60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7,486만4천원 대비 2.90%인 3억114만5천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세입 과목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40억4,236만3천원과 시비보조금 61억5,810만5천원임.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및과태료의 이상 감소로 전년 대비 비해 3억5,303만4천원, 81.26%가 감액됨.
- 금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부서별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 내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하였음.
- 그러나, [위생과]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증진과]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찾동방문간호사 인력비 [의약과]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강보건지소 인력비 등은 그 비용이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증가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등의 검토를 위한 인력규모의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빈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서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됨.

- 의료 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운영은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거점별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임.
- 다만,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존 관리조직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는 문제 및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그 성격상 안정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금사업이 일반 예산 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미흡하고, 의회 예산안 심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 방식보다는 일반회계 예산 항목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되겠음.
- 아울러, 보건소의 예산수립 시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국·시비매칭 사업일지라도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연례적·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및 수혜대상자에게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선제적 해결 방안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보건소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편성사유
보건 행정과	보건소운영개선 (열린보건소) -민원편의 사무실 개선 공사	27,000	0	27,000	민원편의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 (3층 결핵실 이전)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 터 설치,운영	104,668	0	104,668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신규사업
건강 증진과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자격확인대상자 산모신 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	20,000	0	20,000	시비:구비=50:50 매칭사업으 로 대상자확대에 따른 사업 비 증가
의약과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서강보건지소)	30,124	0	30,12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8,345	0	8,345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인력운영비 (서강보건지소)	71,335	0	71,335	서강보건지소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인건비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